

2021.9. 13.

# 중대재해처벌법

## 시행령 등 주요내용



산재예방보상정책국

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

# 발표순서



I . 중대재해처벌법의 의의

II .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

III .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주요내용

#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및 목적

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



'20. 5월 00중공업  
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,



'18.12월  
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작업자 끼임 사고 1명 부상



'20.5월 물류창고  
건설현장 화재사고



가습기 살균제 사건



4.16 세월호 사건

안전·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·중대시민재해에 대한  
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 처벌을 규정

⇒ 안전·보건에 관한 경영책임자의 **경각심 제고**와 **인식 개선**, **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**

목적

-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 확보
-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전 예방

# 중대재해처벌법의 의의

- ☑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

- ‘처벌’은 자체가 목적이 아닌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
- 안전·보건 투자 확대 및 체계적인 안전·보건관리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이 궁극적 목적

- ☑ ‘안전·보건 조치의무’ ≠ ‘안전·보건 확보 의무’

## [산업안전보호법] 안전·보건 조치의무

-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직접적·구체적인 조치

## [중대재해법] 안전·보건에 관한 관리상의 의무

-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운영
-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상의 의무이행 점검 등

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+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·보건관리체계 구축  
⇒ 산업재해 예방 달성

#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

	산업안전보건법	중대재해처벌법 (중대산업재해)
의무주체	사업주 (법인사업주+개인사업주)	개인사업주, 경영책임자등
보호대상	근로자, 수급인의 근로자, 법정 특고 (택배기사, 보험설계사 등 시행령 제67조에 해당하는 9개 직종)	근로자, 노무제공자, 수급인,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
적용범위	전 사업장 적용 (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적용)	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(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시행)
재해정의	중대재해 :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	중대산업재해: 산안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

	산업안전보건법	중대재해처벌법 (중대산업재해)
의무내용	<p><b>사업주의 안전조치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시</li> <li>② 굴착·발파 등 위험한 작업시</li> <li>③ 추락·붕괴 우려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시</li> </ul> <p><b>사업주의 보건조치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</li> <li>②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</li> <li>③ 환기·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</li> </ul>	<p><b>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□보건 확보 의무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·이행</li> <li>②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·이행</li> <li>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조치</li> <li>④ 안전·보건관련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</li> </ul>
처벌수준	<p><b>자연인</b> (사망)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(안전□보건조치위반)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</p> <p><b>법인</b> (사망) 10억원 이하 벌금 (안전□보건조치위반) 5천만원 이하 벌금</p>	<p><b>자연인</b> (사망)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(병과 가능) (부상□질병)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</p> <p><b>법인</b> (사망) 50억원 이하 벌금 (부상□질병) 10억원 이하 벌금</p>

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에 대해 기업 본사 수사·경영자 처벌  
 법상 의무 준수를 위해 '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' 숙지·준수

— II —

##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



# 중대재해처벌법상 주요 정의 (제2조)

## 중대산업재해

☑ 산업재해 중 사망, 2명 이상 부상, 3명 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

- ① 사망자 1명 이상
-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
-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\*가 1년 내 3명 이상

\*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

## 종사자 범위

☑ 근로자, 노무제공자, 단계별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·노무제공자 등

## 사업주

- ☑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
- ☑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

## 경영책임자

- ☑ 사업을 대표·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
- ☑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·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

\* 중앙행정기관·자치단체·지방공기업의 장, 공공기관의 장 포함



# 법 적용범위 및 시행일

## 적용 제외

- ☑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(개인사업주에 한정) 또는 경영책임자등

## 시행일

- ☑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- ☑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
  -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
  -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

# 사업주·경영책임자등에 안전·보건 확보의무 부과

## 종사자에 대한 안전·보건 확보의무(제4조)

-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
-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
-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
- 4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\* ①, ④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 위임

제3자에게 도급·용역·위탁 등을 한 경우,  
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·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

(제5조, 실질적 지배·운영·관리 책임 요구)

#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및 양벌규정

## 벌금 및 징역

- ☑ 안전·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

사업주 또는  
경영책임자

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(임의적 병과),  
사망 외 중대산업재해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
\* 5년 내 재범 시 형의 1/2까지 가중

법인

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, 사망 외 10억원 이하 벌금

##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

- ☑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·기관 경영책임자 (\*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)

## 발생사실 공표

- ☑ 안전·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명칭 등 공표

## 징벌적 손해배상

- ☑ 중대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 
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

— III —

#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주요내용



#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기준 마련

## 「중대재해처벌법」의 중대산업재해 정의

- ① 사망자 1명 이상
-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
-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

##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던 “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”의 기준 마련

인과관계  
명확성  
(급성)

사업주의  
예방가능성

피해의  
심각성

## 24가지 질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

\*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(제1호부터 제13호까지),  
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(제14호) 등

#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 조치에 관한 구체적 내용

소속 근로자만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전체를 보호

##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·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

- 중대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리더십

## 2 안전·보건 업무 전담하여 총괄·관리하는 조직 구성

-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\* 3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
\* 산업안전 제17조(안전관리자), 제18조(보건관리자), 제19조(안전보건관리담당자), 제22조(산업보건의)
-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 또는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 건설회사 대상

## 3 사업장 유해·위험요인의 확인·개선 절차 마련, 이행상황 점검·조치

- 개별 기업에 적합한 방법 마련, 복수의 사업장은 사업장별 특성 반영
- 확인·개선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 조치
-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·결과 보고로 같음

#### 4 안전·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

- 재해예방 필요 안전·보건 인력, 시설, 장비 구비
- 제3호에 따른 유해·위험요인 개선

####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

-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관리감독자,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필요 권한·예산 부여
-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·관리 (반기 1회 이상)

#### 6 안전·보건 전문인력의 배치

-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산업보건의 배치
-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름 (예: 기업규제완화법)
- 300인 미만 등 겸직 가능 사업장은 이들의 안전 및 보건 업무 시간 보장

7

## 종사자 의견 청취, 개선방안 마련·이행 점검

- 안전·보건 사항 종사자 의견 청취 및 주기적 점검(반기 1회, 방식 제한 없음)·조치
- 산업안전보건위원회, 안전 및 보건 협의체 논의 및 심의·의결로 갈음 가능

8

## 중대산업재해 발행 대비 매뉴얼 마련

- 작업중지, 근로자 대피 및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
- 중대산업재해 입은 사람 구호조치, 추가 피해방지 조치
- \* 반기 1회 이상 점검

9

## 도급, 용역, 위탁 시 안전·보건 확보 기준·절차 마련 및 점검

- 수급인 등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·기술 평가 기준·절차
- 수급인 등의 안전·보건 관리비용 기준
- (건설업·조선업) 공사기간·건조기간에 관한 기준
- \* 반기 1회 이상 점검



# 안전·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“안전·보건 관계 법령”이란?

「산업안전보건법」을 기본으로,  
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종사자의 안전·보건에 관계되는 법령

의무이행에  
필요한  
관리상의 조치

1

안전·보건 관계 법령 이행 여부 점검,  
반기 1회 이상 점검(지정 기관 위탁 포함) 결과 보고

2

이행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경우  
인력, 예산 등 추가 편성·집행 등 이행에 필요한 조치

3

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확인(반기 1회 이상 점검, 지체 없이 보고)  
교육 이행 지시,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

# 안전보건교육의 수강

##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들은 안전보건교육 수강

분기별로 대상자 확정  
(고용노동부)



교육 실시일  
30일 전까지 통보



통보내용

1. 안전보건교육 실시 기관 등
2. 교육일정
3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교육  
실시기관

☑ 안전보건교육기관\*에 위탁

\* 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
또는 「한국산업안전보건법」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기관

교육시간  
및 비용

☑ 총 20시간 범위

☑ 교육비용은 교육대상자가 부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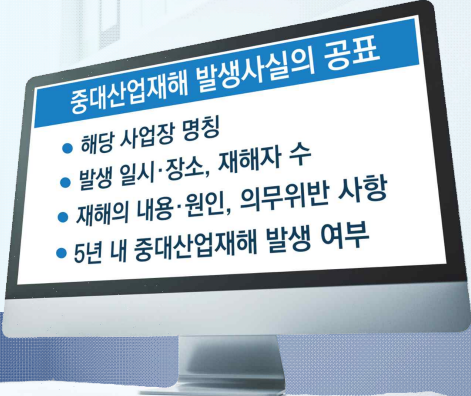
교육  
내용

☑ 안전보건경영방안: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

☑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방안

#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

- ☑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

- 
-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
- 해당 사업장 명칭
  - 발생 일시·장소, 재해자 수
  - 재해의 내용·원인, 의무위반 사항
  -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

---

# 감사합니다

---

